

# 經濟週評

세계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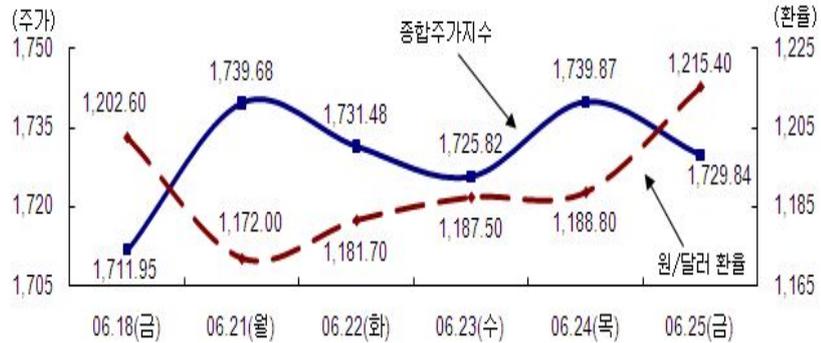
10-25(통권 405호)  
2010.06.25



■ 출산율 1.1 시대의 딜레마와 극복 과제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6.18~6.25)



차 례

|                          |    |
|--------------------------|----|
| 주요 경제 현안                 | 1  |
| □ 출산율 1.1 시대의 딜레마와 극복 과제 | 1  |
| 주요 국내 외 경제지표             | 19 |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연구본부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2072-6210, bkyoo@hri.co.kr)  
 : 김 동 열 연 구 위 원 (2072-6213, dykim@hri.co.kr)  
 전 선 형 연 구 원 (2072-6214, shjeon@hri.co.kr)

## Executive Summary

### □ 출산율 1.1 시대의 딜레마와 극복 과제

#### ■ 저출산의 고착화 현상과 원인

1983년 합계출산율이 2.06을 기록하여 대체출산율(2.1) 이하로 내려온 이래 30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9년에는 1.15로서 OECD 평균인 1.6을 크게 하회하고 있다. 미혼율의 증가와 가임여성인구의 감소, 혼인건수의 감소 등 인구구조와 사회여건을 감안할 때 당분간 저출산 추세가 고착화될 전망이다. 출산기피의 가장 큰 요인은 육아 및 교육과 관련된 비용이었으며, 육아관련 시설과 서비스의 부족,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저출산 대책의 선호도 조사 결과, 기혼 취업 여성의 경우 양육비 지원이 34.4%로 가장 높았고, 일-가정 양립 27.3%, 육아관련 인프라 지원 23.9%, 의료지원 12.0%였다.

#### ■ 출산율 1.1 시대의 5가지 딜레마

(1)정책효과 딜레마: 저출산 예산의 GDP비중이 '06년 0.24%(2.1조원)에서 '10년 0.54%(6.0조원)로 증가했으나, 출산율은 '07년 1.25에서 '09년 1.15로 떨어지는 등 아직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2)일-가정 양립 딜레마: 여성의 경제활동증가율이 지난 30년간 42.8%에서 49.2%로 증가하는 등 일-가정 양립의 필요성은 커졌으나 가사분담과 근로시간 등 일-가정 양립의 현실은 여전히 열악한 상태다. (3)계층별 딜레마: 저출산 대책과 지원은 서민층에 맞춰져 있으나, 중산층의 출산 자녀수는 1.58명으로서 서민층 1.68에 비해 가장 낮은 상황이다. (4)연령별 딜레마: 정부의 저출산대책은 주로 기혼 여성에 맞춰져 있으나, 최근 20대 여성의 미혼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혼인건수 자체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 (5)규모별 딜레마: 중소기업의 여성 고용이 대기업보다 더 많아 일-가정 양립이 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과 보육시설 등 일-가정 양립의 여건은 중소기업이 더 열악한 상태에 있다.

#### ■ 출산율 2.0 시대를 위한 패러다임의 변화

출산율 1.1 시대를 벗어나려면 출산과 육아를 바라보는 사회·경제적 패러다임이 크게 변해야 한다. 여성과 가족의 독주(獨奏)에서 벗어나 남성과 사회,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가정-사회-기업-정부의 4중주'로 전환되어야 하며, 아빠 육아휴가 활성화와 탄력근무 등 가족친화경영이 정착되어야 한다. 정책대상을 서민층에서 중산층으로 확대하고, 육아를 미래에 대한 투자(경제정책)로 인식하며,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개선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 ■ 출산율 2.0 시대를 위한 정책 과제

첫째, 출산율 2.0 시대를 열기 위해 먼저 예산 2.0 시대를 먼저 열어야 한다. 현재 GDP의 0.5%에 불과한 저출산예산의 비중을 2020년 GDP의 2%까지 올려야 한다. 둘째,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유연근로 선택권을 부여하고 최장 5년의 휴가적치제도를 도입하는 등 일-가정 양립과 가족친화경영을 적극 지원한다. 셋째, 육아관련 수당의 수혜자가 되기 위한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서민층은 물론 중산층까지도 저출산 대책의 효과를 피부에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국민연금의 대체투자 재원을 활용하여 소액의 보증금과 월세만으로 입주 가능한 '국민연금 렌트아파트'의 공급을 확대한다. 다섯째, 중소기업이 주로 활용하는 '엄마채용장려금'과 '임신·출산후 계속고용지원금' 예산(2010년 29억원)을 더 많이 배정하여 여성 고용이 많고 일-가정 양립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여섯째, 학업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미혼모 대안학교를 보급하는 등 다양한 가족형태를 용인하는 사회적 여건의 조성이 필요하다. 일곱째, 손자손녀 돌봄서비스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추가 지급함으로써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의 동시 해결을 도모한다.

## < 출산율 1.1 시대의 딜레마와 극복 과제 >

| 저출산 현상과 원인          |   |
|---------------------|---|
| 저출산 현상과 원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출산 고착화: 1980년 2.83 → 2009년 1.15</li> <li>- 저출산 출산기피 요인: 양육비와 교육비, 소득, 주택, 일-가정 양립</li> <li>- 저출산대책 선호도: 양육비 지원 &gt; 일·가정 양립 &gt; 육아인프라</li> </ul> |
| 출산율 1.1 시대의 5가지 딜레마 |   |
| ①정책효과 딜레마           | - 저출산 예산은 증가 → 출산율은 계속 감소 (정책효과 아직 없음)  |
| ②일가정양립 딜레마          | -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증가로 일-가정 양립 필요성은 증가<br>→ 가사분담, 근로시간 등 일-가정 양립 여건은 여전히 열악   |
| ③계층별 딜레마            | - 저출산 대책과 지원은 서민층에 맞춰져 있으나,<br>중산층의 출생아 수가 가장 적음  |
| ④연령별 딜레마            | - 30대 기혼 여성에게 수혜가 집중되지만, 20대 미혼율이 급증  |
| ⑤규모별 딜레마            | -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일-가정 양립이 더 필요 (여성 고용율 등)<br>→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일-가정 양립의 여건은 더 열악   |

| 출산율 2.0시대를 위한 패러다임의 변화  |  |
|-------------------------|--|
| 출산율 2.0 시대를 위한 패러다임의 변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 육아주체를 엄마에서 부모 공동으로, 일과 직장 중심에서 일-가정의 조화로</li> <li>- 사회: 육아의 사회적 책임 강화, '가정+사회+기업+정부'의 4중주</li> <li>- 기업: 아빠육아휴가 활성화, 근로시간 단축, 유연한 근로 등 가족친화경영 활성화</li> <li>- 정부: 정책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개선에 역점을 두며, 저출산대책을 미래투자와 경제정책으로 인식하여, 관련 예산을 대폭 증가시킴</li> </ul>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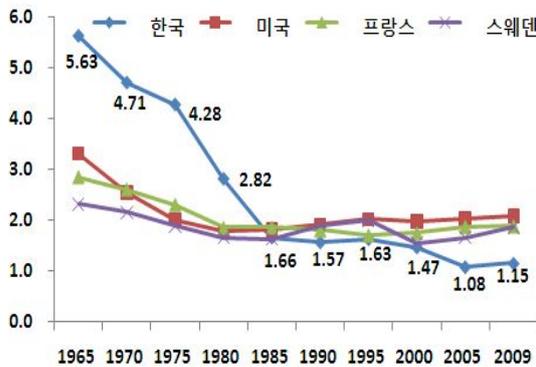
| 출산율 2.0 시대를 위한 정책 과제 |  |
|----------------------|--|
| ①정책딜레마 해소            | - 출산율 2.0 시대를 위해 예산 2.0 시대를 열어야 (GDP의 2.0%로) |
| ②일가정양립 추진            | - 임신 근로자에게 유연근로 선택권 부여, 장기 휴가적치제도 도입         |
| ③계층딜레마 해소            | - 육아수당 등 저출산 대책의 보편화 (자녀수별, 소득별 제한 완화)       |
| ④연령딜레마 해소            | - 미혼율을 낮추기 위해 신혼부부용 렌트 아파트 (rent apt.) 공급 확대 |
| ⑤규모딜레마 해소            | - 중소기업이 주로 활용하는 '임신·출산후 계속고용지원금' 예산 확대       |
| ⑥기타 정책제안             | - 미혼모 대안학교 설립, 손자손녀 도우미에 대한 고령연금 추가 지급       |

## 1. 저출산의 고착화 현상과 원인

○ (저출산 고착화) 1983년 합계출산율<sup>1)</sup>이 2.06을 기록하여 대체출산율(2.1) 이하로 내려온 이래 30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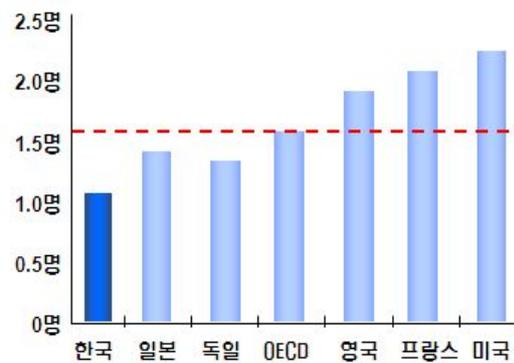
- 1965년 5.63이었던 합계출산율은 1985년 이후 미국, 프랑스, 스웨덴 등 선진국 밑으로 내려왔으며, '09년에는 1.15로서 OECD 평균(1.6)을 크게 하회. 인구 구조와 사회적 여건을 감안할 때 당분간 저출산 추세가 고착화될 전망

< 국가별 연도별 출산율 추이 >



자료: 통계청

< OECD 국가 출산율 비교 >



자료: OECD, Family Database, 2009

- '09년 출생아 수는 44.5만 명으로 전년 대비 2.1만 명 감소했으며, 10년 전인 1999년의 61.4만 명에 비해서는 16.9만 명이나 감소
- '09년의 혼인건수는 31만 건으로 전년 대비 1.8만 건 감소했으며, 25~39세까지의 주된 가임여성 인구도 '09년 606.4만 명으로 전년 대비 11.4만 명 감소
- '09년 여자의 평균 초혼 연령 28.3세, 산모의 평균 출산연령 31.0세로 상승

< 여성 인구, 출생아, 혼인건수 추이 >

(단위: 천 명, 천 건)

|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sup>p</sup> |
|-----------|---------|---------|---------|---------|--------|-------|-------|--------|--------|---------|-------------------|
| 25~39세 여성 | 6,584   | 6,532   | 6,443   | 6,364   | 6,303  | 6,266 | 6,250 | 6,250  | 6,241  | 6,178   | 6,064             |
|           | -       | (-52)   | (-89)   | (-79)   | (-61)  | (-37) | (-16) | (0)    | (-9)   | (-63)   | (-114)            |
| 출생아       | 614     | 635     | 555     | 492     | 491    | 473   | 435   | 448    | 493    | 466     | 445               |
|           | (-21)   | (20)    | (-80)   | (-63)   | (-2)   | (-18) | (-38) | (13)   | (45)   | (-27)   | (-21)             |
| 혼인건수      | 360.4   | 332.1   | 318.4   | 304.9   | 302.5  | 308.6 | 314.3 | 330.6  | 343.6  | 327.7   | 309.8             |
|           | (-13.1) | (-28.3) | (-13.7) | (-13.5) | (-2.4) | (6.1) | (5.7) | (16.3) | (12.9) | (-15.8) | (-17.9)           |

자료: 보건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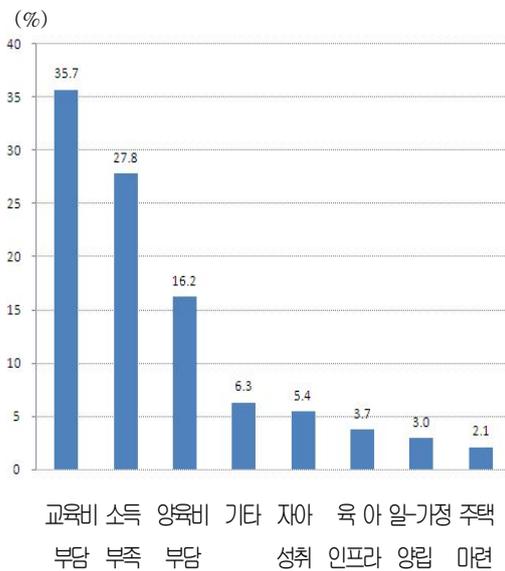
주: ( )안은 증감, p는 추정치

1) 합계출산율은 여자 1명이 가임기간(15~49세)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대체출산율은 현재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합계출산율. 粗출산율은 1년간의 총 출생아 수를 그 해의 15~49세 여자 인구로 나눈 비율.

○ (출산기피 요인 및 정책 선호도) 출산기피의 가장 큰 요인은 육아 관련 비용이었으며, 육아관련 인프라, 일-가정 양립<sup>2)</sup>의 부족 등이 뒤를 이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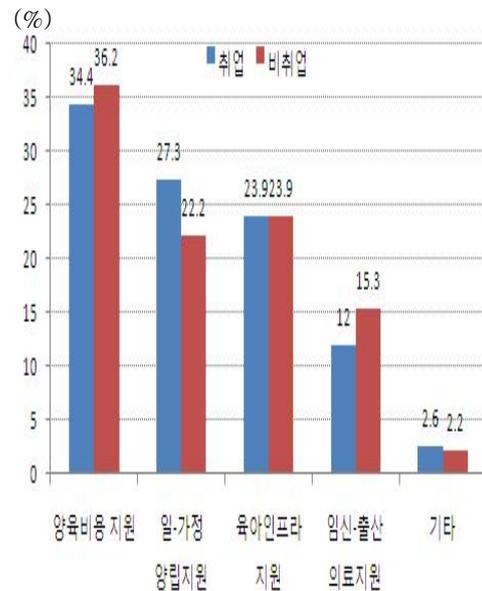
- 출산장려 정책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양육비 지원, 일-가정양립 지원, 육아인프라 지원의 順으로 응답률이 높았음
  - 기혼 여성의 출산기피 요인을 조사한 결과<sup>3)</sup>, 교육비 부담 35.7%, 소득부족 27.8%, 양육비 부담 16.2%, 여가 및 자아성취 5.4%, 육아인프라 부족 3.7%, 일-가정양립 부족 3.0%, 주택마련 부담 2.1%의 順으로 나타남
  - 출산장려 정책에 대한 선호도를 보면, 기혼 취업여성의 경우에는 양육비 지원 34.4%, 일-가정양립 지원 27.3%, 육아인프라 지원 23.9%, 임신출산관련 의료 지원 12%의 순으로 나타남
  - 기혼 미취업 여성의 경우에는 양육비 지원 36.2%, 육아인프라 지원 23.9%, 일-가정양립 지원 22.2%, 임신출산관련 의료 지원 15.3%의 순으로 나타남

<기혼여성의 출산 기피 요인>



자료: 통계청 KOSIS DB  
주: 보건사회연구원(2006) 조사 결과

<기혼여성의 저출산 대책 선호도>



자료: 통계청 KOSIS DB  
주: 보건사회연구원(2006)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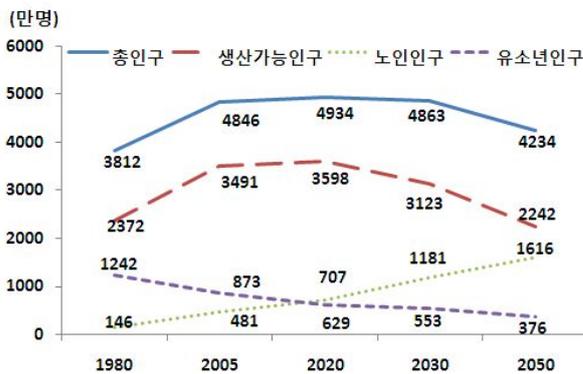
2) '일-가정 양립'은 '일과 삶의 조화' 또는 '직장과 가정의 조화'(Work-Life Balance; WLB)이라고도 불림  
3)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05년 20~44세의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 조사' 결과. 2009년 6월 제2차 조사가 있었으나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를 감안하여 인용하지 않음.

- 위와 같은 '기혼여성'의 출산기피 이외에도 **20대 미혼 남녀의 증가, 동거부부나 미혼모에 거부감**을 보이는 보수적 문화 등도 저출산의 중요한 원인
  - 25~29세 여성의 미혼율이 '80년 14.1%에서 '05년 59.1%로 크게 증가했으며, 30~34세 여성의 미혼율도 '80년 2.7%에서 '05년 19.0%로 6배 가량 증가
  - 2008년 미국보건통계센타에 따르면, 신생아 중 미혼모 출산 비중이 스웨덴은 55%, 노르웨이 54%, 미국 50.4%, 프랑스 50%, 덴마크 46%, 영국 44%, 호주 38%, 러시아 25%, 일본 3%. **한국은 1.6%**

○ (저출산의 여파) 저출산의 고착화와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총인구 및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잠재성장률의 하락 등 경제적 충격이 막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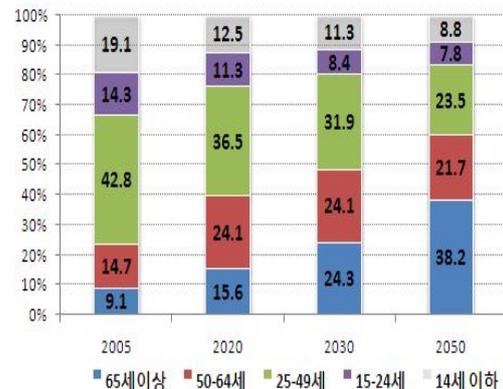
- 저출산·고령화의 여파로 총인구는 2018년 4,934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여 2050년에는 4,234만 명까지 줄어들 전망이며, 생산가능인구(15-64세)도 2016년 3,619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여 2050년에는 2,242만 명까지 감소할 전망
  - 노동력 부족은 2010년 16만, '15년 63만, '20년 152만 명으로 급증할 전망<sup>4)</sup>
  - 생산가능인구(15-64세) 1% 감소時 1인당 실질GDP 0.08%p 감소, 노인인구 1% 증가時 1인당 실질GDP 0.04%p 감소<sup>5)</sup>
  - 2007년에는 생산가능인구 7.0명이 노인 1명을 부양했으나, 2020년에는 4.6명, 2050년에는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함

<저출산과 인구구조 변화>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  
 주: 출산율 '05년 1.08, '40년 1.28 가정

<연령별 인구구조 전망>



자료: 통계청(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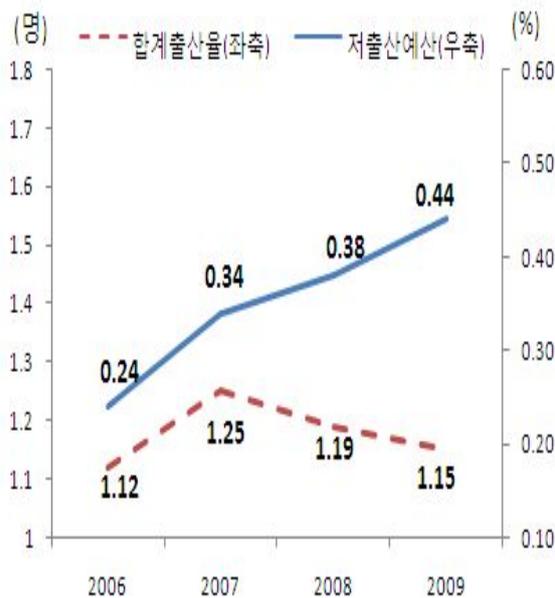
4) 한국노동연구원(2005), '중장기인력수급전망 2005-2020'  
 5) IMF(2004), World Economic Outlook

## 2. 출산율 1.1 시대의 5가지 딜레마

○ (딜레마 1: 정책효과의 딜레마) 저출산대책을 강화하고 예산도 늘리고 있지만, 저출산 추세가 지속되는 등 정책효과가 아직 가시화되지 않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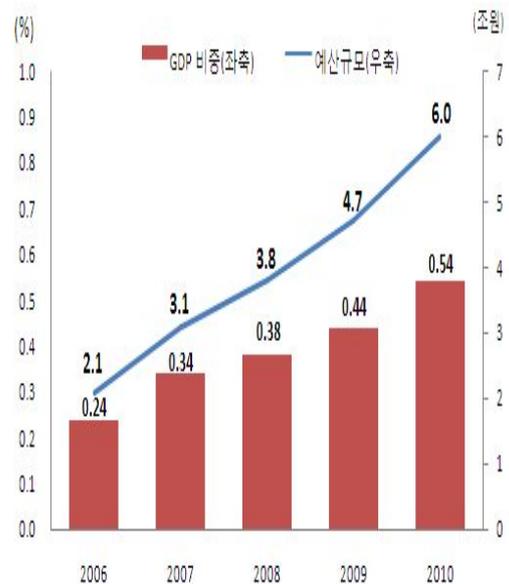
-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제1차 저출산대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도 증대시켜왔지만, 일시적으로 증가했던 출산율은 다시 감소하고 있음
- GDP 대비 저출산대책 예산의 비중은 2006년 0.24%에서 2009년 0.44%까지 증가했고 예산규모도 2.1조원에서 4.7조원까지 크게 증가했으나, 합계출산율은 오히려 2007년 1.25에서 2009년 1.15로 떨어지고 있음
- 저출산이 고착화되어 관련 예산이 계속 더 투입되더라도 그에 따른 효과는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나타나며<sup>6)</sup>, 저출산대책 예산뿐만 아니라 일-가정 양립, 동거, 미혼모, 이민 등 문화·제도적 요인도 출산율 제고에 중요함

<출산율과 저출산예산의 추이>



자료: 통계청, 보건복지부  
주: 저출산예산의 GDP 비중

<저출산대책 예산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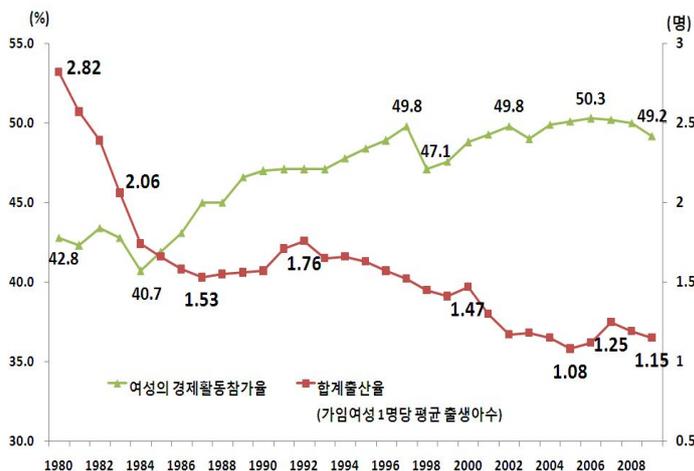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6) “프랑스에서 부모의 일과시간에 자녀를 맡아주는 유치원이 생긴 것은 1881년이었고, 출산휴가를 허용하는 기업은 1913년에 생겨났으며, 1917년부터 출산장려책으로 가족수당이 도입되었다”(프랑스 국립인구문제연구소(INED)의 르 타블리에 교수 인터뷰(오마이뉴스(2010.3.9, ‘프랑스 출산율 2.0이 부럽다? 100년 걸렸다’))

○ (딜레마 2; 일-가정 양립의 딜레마)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로 일-가정 양립의 필요성은 증가하는데, 가사분담 등 일-가정 양립은 여전히 열악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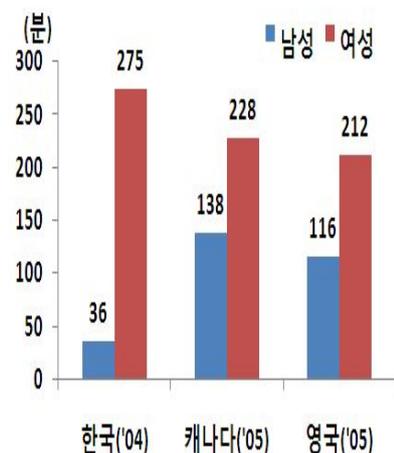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80년 42.8%에서 '09년 49.2%로 증가하여 일-가정 양립의 필요성은 커졌으나, 가사분담과 근로시간 등 현실은 여전히 열악
  - 2004년 한국 남성의 가사분담시간은 36분으로 여성의 275분에 크게 못 미침
  - 2008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2,256시간<sup>7)</sup>에 달해, OECD 회원국 평균 1,764시간보다 492시간 더 많음
  - 산전후 휴가 사용자 중 육아휴직 사용자의 비중은 '07년 36.3%에 불과하며, 육아휴직자 중 남성은 '05년 1.9%에서 '09년 1.4%로 오히려 감소<sup>8)</sup>
  - 취업 기혼여성(20~44세)의 결혼 전후 6개월 내 퇴직 비율이 61.3%<sup>9)</sup>에 달하며, 선택적근로시간제 시행기업과 시차출퇴근제 시행기업이 2.7%<sup>10)</sup>에 불과
- 위와 같은 일-가정 양립의 딜레마로 인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는 엇박자가 계속되고 있음
  - 북유럽국가와 프랑스, 미국 등은 높은 여성 고용률과 높은 출산율이 병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



자료 : 통계청

<가정내 가사분담 현황>



자료: 통계청 (KOSIS DB)

7) SC금융지주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 근로자의 주당 평균근무시간은 50.8시간으로, 국제노동기구(ILO)가 권장하는 주 40시간을 27%나 초과했으며, 응답자의 63.7%가 초과근무를 한다고 응답 (연합뉴스, 2010.6.11 기사).

8) 노동부, '고용보험통계연보', 각년도 (별첨 자료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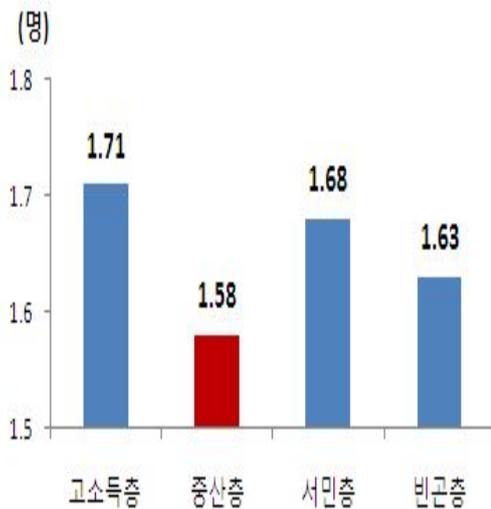
9)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6)

10) 노동부, '근로시간의 유연화 방안에 관한 연구', 2004

○ (딜레마 3; 계층별 대책의 딜레마) 정부 저출산 대책의 주된 수혜계층은 서민층이지만, 출산이 가장 저조한 계층은 중산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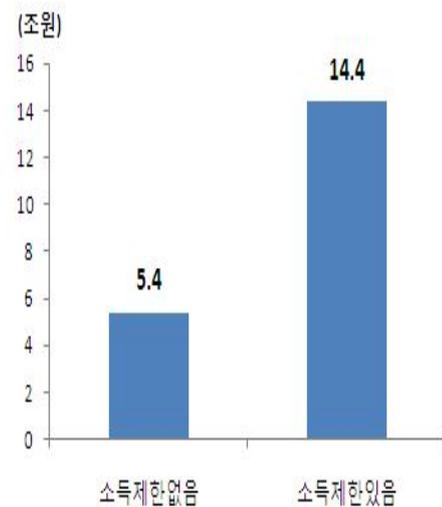
- 그동안 저소득층 위주의 지원과 양육시설 양적 확대에 주력해 왔으나, 소득계층별 출산 현황을 보면 중산층이 가장 저조함
- 소득수준별 제한이 있어서 주로 서민층에게 투입되는 저출산대책 예산이 지난 5년간 14.4조 원으로 전체 예산의 73%에 달했지만, 소득계층별 출산자녀 수를 보면 중산층의 출산 자녀수가 1.58명으로 서민층의 1.68명보다 작음

< 소득계층별 출산 자녀수 >



자료: 보건사회연구원(2009)

<소득제한 유무별 예산 비중>



자료: 보건복지부

주: 2006-2010년까지 5년 예산 기준

○ (딜레마 4; 연령별 대책의 딜레마) 정부 저출산 대책은 주로 기혼 여성에 맞춰져 있지만, 20대 여성의 미혼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 그동안 기혼 여성에 대한 지원과 유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데 주력해 왔으나, 다른 한편으로 20대의 유배우자 비율은 크게 감소하고, 미혼율은 급증하여 이들 미혼 여성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25-29세 여성의 미혼율이 1995년 29.6%였으나, 2005년 59.1%로 약2배 증가하는 등 '97년 IMF 외환위기로 인해 2000년 전후 20대의 미혼율이 급상승

<우리나라 여성의 연령별 유배우율과 미혼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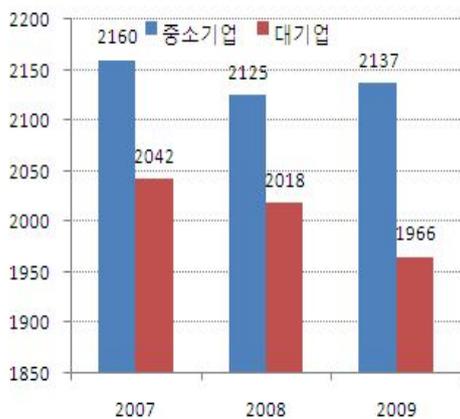
|          |       | 1980 | 1985 | 1990 | 1995 | 2000 | 2005 |
|----------|-------|------|------|------|------|------|------|
| 유배우율 (%) | 20~24 | 33.7 | 27.8 | 19.5 | 16.7 | 10.7 | 6.2  |
|          | 25~29 | 84.9 | 80.9 | 77.3 | 69.9 | 59.1 | 40.1 |
|          | 30~34 | 94.3 | 93.3 | 92.4 | 91.4 | 86.9 | 78.2 |
|          | 35~39 | 93.4 | 93.3 | 92.8 | 92.2 | 90.7 | 86.9 |
| 미혼율 (%)  | 20~24 | 66.1 | 72.1 | 80.5 | 83.3 | 89.1 | 93.7 |
|          | 25~29 | 14.1 | 18.4 | 22.1 | 29.6 | 40.1 | 59.1 |
|          | 30~34 | 2.7  | 4.2  | 5.3  | 6.7  | 10.7 | 19.0 |
|          | 35~39 | 1.0  | 1.6  | 2.4  | 3.3  | 4.3  | 7.6  |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1980~2005

○ (딜레마 5; 규모별 대책의 딜레마) 중소기업의 근로시간이 매우 길어서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중소기업의 여성 고용비율이 대기업보다 더 높고 일-가정 양립의 여력도 더 열악한 형편

- 대기업의 연간 근로시간은 '07년 2,042시간에서 '09년 1,966시간으로 크게 줄었음에 비해, 중소기업의 경우 2,160시간에서 2,137시간으로 소폭 감소하여 기업규모별 일-가정 양립 여건의 불균형은 더 벌어지고 있음
- 300인 이하 중소기업의 여성 고용률은 44.0%로서, 대기업의 27.0%보다 높음<sup>11)</sup>
-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인 사업장에 직장보육시설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09년 6월 현재 의무이행률은 51.7%

< 기업규모별 근로시간 >



자료: 통계청 KOSIS DB

<대규모 사업장의 직장보육시설 추이>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보육통계', 2009.3

11) 농가 및 자영업 종사자를 제외한 결과로서,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의함(강성원(2010.6))

### 3. 출산율 2.0 시대<sup>12)</sup>를 위한 패러다임의 변화와 정책 과제

#### 3-1. 출산율 2.0 시대를 열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 (새로운 패러다임) 저출산의 고착화에서 탈피하여 합계출산율 2.0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가정, 기업, 사회, 의식, 제도 등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함
-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 향상, 재정건전성 제고,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변화가 시급함
- 가정: 육아의 주체를 엄마에서 부모 공동으로 변화시키며, 일과 직장 중심에서 일-가정의 조화를 중시하는 변화가 필요함
- 사회: 육아의 책임을 개인에서 사회의 책임으로, 보육시설을 민간중심에서 민官조화로, 家庭의 독주(獨奏)를 '家·社·企·政의 4중주'로 전환함
- 기업: 장시간 근로에서 벗어나, 생산성을 높이고 육아휴가와 탄력근로를 활성화하는 가족친화경영(별첨자료 참고)이 절실함
- 정부: 정책의 대상을 중산층 이상으로 확대하고, 시혜성 복지지출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의 차원에서 육아 예산을 GDP의 2%로 크게 늘려야 하며,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개선에 주력해야 함

< 출산율 2.0 시대를 열기 위한 패러다임의 변화 >

| 출산율 1.1 시대의 패러다임    | 주체 | 구분            | 새로운 패러다임                   |
|---------------------|----|---------------|----------------------------|
| 엄마<br>일 중심          | 가정 | 육아 주체         | 부모 공동                      |
|                     |    | 일-가정 양립       | 일-가정 조화                    |
| 개인책임<br>'가정' 독주(獨奏) | 사회 | 육아 책임         | 사회책임                       |
| 민간 중심               |    | 육아 지원<br>보육시설 | '가정+사회+기업+정부' 4중주<br>民官 조화 |
| OECD 最長<br>母性휴가 중심  | 기업 | 근로시간          | OECD 平均                    |
| 단순 경직               |    | 육아휴가<br>근무형태  | 父性휴가 활성화<br>다양 유연 (가족친화경영) |
| 서민층<br>육아비용(예산)     | 정부 | 정책 대상         | 서민층 + 중산층                  |
| 복지정책                |    | 정책 포커스        | 육아비용(예산) +<br>일·가정 양립(제도)  |
| 민간인(임시직)            |    | 예산 성격         | 미래투자(경제정책)                 |
|                     |    | 육아도우미         | 준공무원(전문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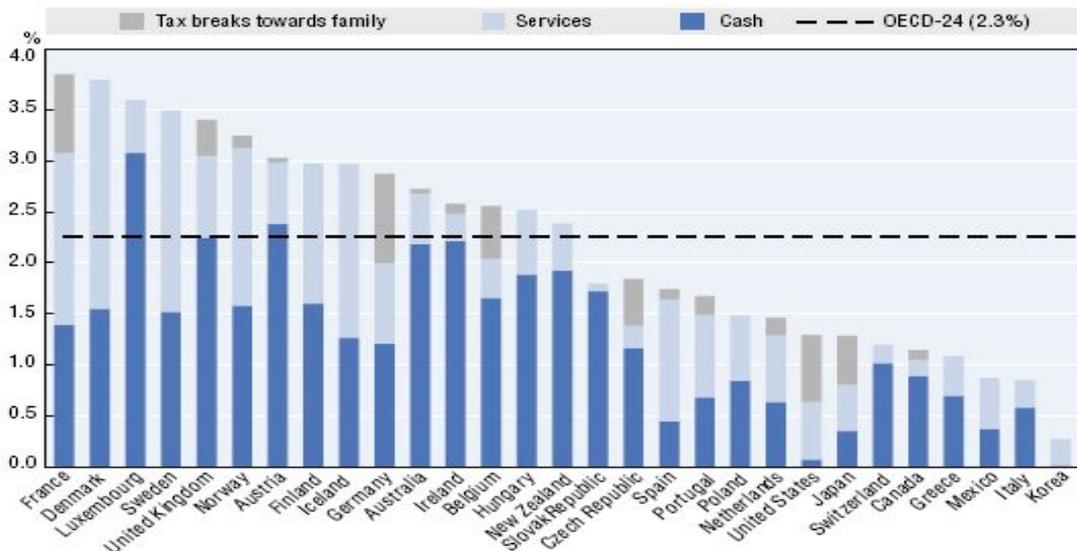
12) 기존의 출산 대책과 근본적으로 다르고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의 '출산율 2.0 시대'이며, 미국이나 프랑스가 최근 달성한 바 있는 출산율 2.0을 목표로 삼는다는 의미에서의 '출산율 2.0'시대임.

### 3-2. 출산율 2.0 시대를 위한 정책 과제

○ (정책효과 딜레마의 극복) 2020년까지 '예산 2.0 시대'를 여는 등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정책효과가 늦어지는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음

- (예산 2.0 시대) 2010년 현재 저출산 관련 사업비가 6.0조원으로 GDP의 약 0.5%에 불과한 예산 비중을 2020년까지 OECD 선진국 평균(2.3%)에 근접하는 GDP의 2.0% 수준으로 대폭 증액
  -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지원을 '사회복지' 차원에서 '미래에 대한 先투자'의 차원으로 발상의 전환

< 가족지원에 대한 GDP 대비 투자비중 비교( '05년) >



\* 자료: OECD(2007), Social expenditure database

○ (일-가정 불균형의 딜레마 극복) 임신 여성근로자에게 유연근로 선택권을 부여하고, 휴가적치제도를 도입하는 등 일-가정 양립정책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의 동반 상승이 가능함

- (임신 중 근무형태 선택권)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유연근로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일-가정의 양립을 지원
  - 프랑스의 오브리법(1998년), 네덜란드의 근로시간 단축권 부여(2000년), 독일의 6개월 이상 고용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권 부여(2001)<sup>13)</sup> 등 성공 사례

- 아래 그림과 같이, 2008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2,256시간에 달해, OECD 회원국 평균 1,764시간보다 492시간 더 많음

< 국가별 연도별 연평균 근로시간 추이 >



자료: OECD(2010), 『OECD Fact Book』

- (휴가적치제도(time-banking system)) 평소에 초과근무를 통해 휴가를 최대 5년까지 적치(time-banking)하도록 허용하고, 적치된 휴가를 출산 및 육아 휴가에 연계하여 활용하는 제도를 도입
  - 프랑스는 1998년 제1차 오브리(Aubry)법에 의거, 연간 탄력근로시간제 및 여러 해에 걸친 휴가적치제도(time-banking system) 등 근로형태 및 시간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조치를 도입하여 출산율 제고를 도모함
- (계층 딜레마 극복) 육아 관련 수당의 소득 기준을 서민층에서 '중산층'까지 확대함으로써, 정부 정책과 지원의 효율성 및 출산율 증가에 기여
  - (보육수당의 보편화) 보육관련 수당을 자녀수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하고 있으나, 자녀수와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을 과감히 없앨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보육료 지원, 아이돌보미 지원, 양육수당 지원, 방과후 학교 바우처 지원 등에 있어서 저소득층과 서민층 중심으로 수혜자격이 부여됨
    - 앞의 '계층별 딜레마'에서 언급되었듯이, 중산층의 출생아 수가 가장 낮은 상황이므로, 각종 양육비용 지원의 수혜자격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것이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되고, 정책에 대한 체감도를 높여줄 것임

13)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06)

<저출산대책 예산(2006-2010)의 유형별 구분>

(단위: 억 원, %)

|            |    | 대상자 직접 지원<br>(바우처, 현금 등) | 인프라 지원<br>(시설 등) | 기타<br>(홍보, 교육 등) | 합계<br>(비중)         |
|------------|----|--------------------------|------------------|------------------|--------------------|
| 소득<br>제한   | 없음 | 34637                    | 18846            | 363              | 53,847<br>(27.2%)  |
|            | 있음 | 137346                   | 6576             | 0                | 143,922<br>(72.8%) |
| 합계<br>(비중) |    | 171983<br>(87.0%)        | 25423<br>(12.8%) | 363<br>(0.2%)    | 197,769<br>(100%)  |

자료: 보건복지부

○ (연령 딜레마 극복) 20-30대의 미혼율 인하를 위해, 국민연금을 대체투자 재원을 활용한 신혼부부용 '렌트 아파트'(rent apt.) 공급을 확대

- (국민연금 아파트) 국민연금의 대체투자 재원을 활용하여, 20-30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소액 보증금과 월세(rent)만으로 입주 가능한 도심형 렌트 아파트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미혼 남녀에게 결혼 문턱을 낮춰줌.
- 20-30대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지하철 역세권 주변을 중심으로 '렌트아파트'를 공급함으로써, 국가적으로는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장기·안정적인 수익원을 발굴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둬

○ (규모별 딜레마 극복) 일·가정 양립의 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이 주로 활용하는 '엄마채용장려금'과 '임신·출산후 계속고용지원금' 예산을 확충

-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임신 및 출산 후 직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엄마채용장려금'과 '임신·출산후 계속고용지원금' 예산은 2010년 현재 각각 5.4억원, 18.0억원 배정되어 있으나, 중소기업을 위해 더 많은 배정이 필요

< 출산·육아후 노동시장 복귀 지원 예산 >

(단위: 억원)

|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
| 출산여성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 0.0   | 7.0   | 14.0  | 5.4   | 5.4   |
| 비정규직의 여성근로자를 위한 출산후 계속고용 지원금 | 13.2  | 13.2  | 3.0   | 5.0   | 18.0  |

자료: 보건복지부

- 학업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미혼모를 위한 대안학교’ 설립하여, 미혼모의 보육과 사회복지를 지원하고, 동거부부의 자녀나 한부모 가정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는 등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하고 지원함
  - 1989년 설립된 호주의 ‘파라웨스트성인학교’(Para West Adult Campus<sup>14</sup>)에서는 16세 이상의 미혼모 등에게 기술교육, 심리상담, 대학진학 등을 지원하고 보육서비스도 제공하는 등 미혼모의 자립과 사회복지를 지원하고 있음<sup>15</sup>
- ‘손자·손녀 돌보미’ 서비스에 참여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고령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세대간 동거를 장려
  - 65세 이상 조부모의 손자·손녀 돌보미 서비스에 대해 고령연금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저출산대책과 고령화대책을 동시에 시행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2010년 현재 부모자식의 2세대 가구가 전체의 54.7%로서 가장 주된 유형의 가구이며, 1인 가구 20.3%, 1세대 가구 17.0%, 3세대이상 가구 6.8% 등
    - 부모와 자식의 세대간 동거, 즉 대가족제도가 다시 확산되도록 지원한다면 고령자 부양 및 출산력 제고에 크게 도움<sup>16</sup>이 될 것임
- 해외교포<sup>17</sup>와 2세, 3세의 유턴(U-turn)을 장려
  - 과거에는 세계 각국으로 이민 나가는 한국인들이 많았으나, 앞으로는 이들 해외교포와 2세, 3세의 유턴을 장려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인구감소와 우수인력의 부족에 대비함

경제연구본부 연구위원 김동열 (2072-6213, dykim@hri.co.kr)  
연구원 전선형 (2072-6214, shjeon@hri.co.kr)

14) <http://www.parawest.sa.edu.au/>

15) 동아일보, ‘호주 미혼모 학교 눈에 띄네’, 2007년6월12일자, 통권 제589호

16) 지난 5월27일 통계청이 개최한 저출산 세미나에서 미국의 ‘필립 모건’ 교수(듀크대 사회과학연구소)도 세대간 동거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한 바 있음

17) 호주, 캐나다, 프랑스 등은 이민정책을 통해 인구를 늘리고 출산율을 제고하는 성과를 거뒀으나, 이민에 따른 사회적 비용 또한 만만치 않아 스웨덴과 독일 등에서는 이민정책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음.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에 거주하는 교포와 2세, 3세의 유턴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함.

< 모성보호 관련 휴가·휴직의 활용 실태 >

(단위: 명, 억원)

| 구분         |                      | '05                   | '06                   | '07                   | '08                   | '09                   |
|------------|----------------------|-----------------------|-----------------------|-----------------------|-----------------------|-----------------------|
| 산전후<br>휴가  | 수혜자수                 | 41,104                | 49,539                | 60,964                | 72,260                | 75,047                |
|            | 지급액                  | 460                   | 909                   | 1,324                 | 1,666                 | 1,785                 |
| 육아휴직<br>급여 | 수혜자수<br>(남성, %)      | 10,700<br>(208; 1.9%) | 13,672<br>(230; 1.7%) | 21,185<br>(310; 1.5%) | 29,145<br>(355; 1.2%) | 35,400<br>(502; 1.4%) |
|            | 지급액                  | 282                   | 345                   | 610                   | 984                   | 1,397                 |
|            | 산전후휴가자 中<br>육아휴직자 비중 | 26%                   | 28%                   | 36%                   | -                     | -                     |

자료: 노동부 '고용보험통계연보'

< 주요 사업별 저출산대책 예산 및 증감율 >

(단위 : 억원)

| 구 분                | '08예산  | '09예산  | 증감액   | 증감율<br>(%) | 비 고                    |
|--------------------|--------|--------|-------|------------|------------------------|
| 1.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 27,239 | 32,269 | 5,030 | 18.5       | 무상보육 확대<br>보육전자바우처     |
| 2. 방과후 학교 내실화      | 1,774  | 2,176  | 402   | 22.7       | 저소득층 자유수강권<br>사이버가정학습  |
| 3.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 218    | 172    | -46   | -21.1      | 신축 80개소                |
| 4.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수당지급  | 0      | 688    | 688   | 0          | 차상위 이하 만0~1세,<br>월10만원 |
| 5. 모성·영유아 건강 검진 강화 | 1,051  | 2,348  | 1,297 | 123.4      | 산전검사비 지원<br>찾아가는 산부인과  |
| 6. 불임부부 지원         | 254    | 263    | 9     | 3.5        | 3회까지 지원                |
| 7. 산모도우미           | 246    | 340    | 94    | 38.2       | 전국가구월평균 50%이하          |
| 8. 필수예방접종 확대       | 358    | 722    | 364   | 101.7      | 민간병의원까지 확대             |
| 9. 산전후 휴가급여 등 지원   | 1,436  | 1,978  | 542   | 37.7       |                        |
| 10. 육아휴직 급여 등      | 654    | 1,610  | 956   | 146.2      | 28천명 지원                |
| 저출산분야 합 계          | 38,039 | 47,457 | 9,418 | 24.8       |                        |

자료: 보건복지부

<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양육지원 및 일-가정 양립 정책 >

| 구분         | 선진국 (프랑스, 일본, 독일, 영국, 스웨덴)  | 우리나라  |
|------------|---|---|
| 양육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세 미만 아동 보육료(프, 연소득 19천유로(3400만원)이하 무료)</li> <li>사립보육시설이용료의 70%, 세제에서 상환(영)</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4세 아동 차등보육료 지원 (평균소득 100%이하, 소득하위 50%이하 무료)</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5세 아동 공립유치원 무료(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세 아동 보육비 지원</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공립시설 운영비 지원(프, 부모부담액 제외 운영비 66% 지원)</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공립시설 운영비 지원 (인건비 80%)</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정내 보육 지원 (프, 소득계층별 수당 차등 지급)</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이돌보미 지원 (소득계층별 차등 지원)</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초 양육수당(프, 연소득 48천유로 이하 월 172유로)</li> <li>+ 가족수당(프, 20세까지 2자녀 월 120유로, 3자녀 274유로, 4이상 154유로 추가)</li> <li>아동수당(일, 3세미만 월 1만엔, 3세 ~초등 졸업까지 5천엔, 셋째이상 1만엔)</li> <li>* 스 - 16세까지 월950크로네(12만원), * 영 - 첫째 월10만원, 둘째이상 월7만원</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양육수당(차상위계층 시설미이용 0~1세 아동 월 10만원)</li> </ul>              |
| 일-가정 양립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전후휴가(프: 임금 100%, 1~2자녀 16주, 3자녀 26주, 스: 임금 80%, 16주, 日: 임금 66%, 14주, 쌍둥이 22주)</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전후휴가(임금 100%, 90일)</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성휴가 (프, 100% 유급 14일, 쌍둥이 18일)</li> <li>부성할당제 (스)</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배우자출산휴가(무급 3일)</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육아휴직(프, 첫째 6개월, 둘째이상 36개월, 536유로(95만원))</li> <li>* 스 - 80% 16개월, 일 - 50% 12개월</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육아휴직(1년, 50만원)</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프, 장·단기 수당 지급)</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육아기 근로시간 단축</li> </ul>                                   |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09.2.25

< 산전후 휴가의 국가별 비교 >

| 국가   | 도입시기 | 휴가기간     | 휴가급여 (임금대비) | 재원부담 주체 |
|------|------|----------|-------------|---------|
| 영국   | '48년 | 26주      | 92-104%     | 사회보험    |
| 프랑스  | '28년 | 16-24주   | 100%        | 건강보험    |
| 독일   | '79년 | 14주      | 100%        | 건강보험    |
| 일본   | '80년 | 14주      | 60%         | 건강보험    |
| 스웨덴  | '74년 | 60주      | 80%         | 부모보험    |
| 캐나다  | '71년 | 17-18주   | 55%         | 실업보험    |
| 네덜란드 | '76년 | 16주      | 100%        | 실업보험    |
| 한국   | '53년 | 13주(90일) | 100%        | 고용보험    |

자료: 노동부(2006) 자료에 의거 재작성

<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 현황 >

|             | 민간기업 (17개)  | 공공기관 (17개)   |
|-------------|---|--|
| 2008년 (14개) | 교보생명, 대웅제약, 유한킴벌리, LG생명과학, 선보공업   |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전북미음사랑병원, 정보문화진흥원 |
| 2009년 (20개) | 한미파스스, 롯데쇼핑, 매일유업, 경남스틸, 부산은행, 아시아나항공, 하이닉스반도체, 경은산업, 삼광, 삼광공업, 에디코, 태양산업 | 기술보증기금, SH공사, 관세청, 가스안전공사, 한국남부발전, 수자원공사, 정보화진흥원, 한국중부발전                                 |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거 재작성

< 국가별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사례 >

| 국가   | 기업                                       | 가족친화경영 사례   |
|------|--|---|
| 프랑스  | · AXA Financial Protection (금융, 2만4천명)   | - 근로자를 위한 '가사대행 서비스' 부서 설치 (세탁, 탁아소 예약, 탁아소 소개 등)                           |
|      | · TOTAL (에너지, 5만명)                       | - 일상생활 정보제공 서비스<br>- 자녀수당 지급<br>- 여성근로자 비율 31%                              |
|      | · SMART (자동차, 2천명)                       | - 사내 보육시설 설치 (아침 5시30분부터 저녁 8시30분까지)  |
| 미 국  | · AllState Insurance Company (보험회사)      | - 탄력근무제 (원격근무 가능)<br>- 사내 보육시설 운영   |
|      | · Abbott (제약회사, 3만명)                     | - 가족간호 휴직제도 (아픈 가족을 위한 재택근무, 파트타임 등)  |
|      | · Baptist Health South Florida (병원, 1만명) | - 사내 보육센터 설치 (휴일, 방학 프로그램 운영)<br>- 근로자의 70%가 흡인 또는 여성<br>- 근로자의 38%가 유자녀 여성 |
| 영 국  | · Boehringer Ingelheim UK (제약회사, 9백명)    | - 탄력근무 (시차 출퇴근, 파트타임, 재택근무 등)<br>- 출산 후 복귀율 90%                             |
|      | · Good Hope Hospital (병원, 3천명)           | - 자기선택근무제: self-rostering system (근무일을 스스로 능동적으로 지정)                        |
| 덴마크  | · TDC (통신서비스, 1만5천명)                     | - 육아휴직 6개월 급여 100% 지급<br>- 남성 '아빠휴가' 3개월 급여 100% 지급                         |
| 네덜란드 | · Shell (석유화학)                           | - 탄력근무 (비정기적 재택근무 등)<br>- 여성휴가 지원/ 근로자 카운슬링 서비스                             |
| 한 국  | · 태양산업 (현대용 부탄가스 제조)                     | - 사내 보육시설, 보육비 전액 지원<br>- 출퇴근 시간의 탄력적 운용                                    |
|      | · 유한킴벌리 (휴지, 기저귀 등 제조)                   | - 4조3교대, 시차출퇴근, 보육비지원, 심리상담 등<br>- 이직률 0.2% (제조업 평균 2.57%)                  |

자료: 여성가족부(2006) 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 아동수당 국제 비교 >

|                | 스웨덴   | 일본   | 독일   | 프랑스   |
|----------------|---|--|--|---|
| 주요 수당          | 아동수당<br>(Child allowance)   | 아동수당<br>(Child allowance)  | 아동혜택<br>(Child benefit)  | 가족수당<br>(Family Allowances)   |
| 지급대상 및 소득제한 유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첫째아~16세 미만</li> <li>• 소득제한 없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첫째아~초등학 교수료</li> <li>• 소득제한 있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첫째아~18세 미만</li> <li>• 소득제한 없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둘째아~20세 미만</li> <li>• 소득제한 없음</li> </ul>   |
| 지급월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첫째아:97유로</li> <li>• 둘째아: 106유로</li> <li>• 셋째아: 130유로</li> <li>• 넷째아: 176유로</li> <li>• 다섯째아 이상: 196유로(비과세)</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세미만: 1만 엔</li> <li>• 첫째 · 둘째아: 5,000엔</li> <li>• 셋째아: 1만엔 (비과세)</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첫째 · 둘째아:16 4유로</li> <li>• 셋째아: 170유로</li> <li>• 넷째아이상: 195유로 (과세대상)</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자녀: 없음</li> <li>• 2자녀: 123.92유로</li> <li>• 3자녀이상: 1인당 158.78유로 (비과세)</li> </ul> |
| 기타 수당          | 주택수당, 교육비지원제도, 장애아 간호수당   | 아동부양수당, 특별수당, 부양수당   | 아동부양공제, 주거 관련 급부   | 가족보조수당, 가족지원수당, 한부모수당, 출산 · 양자수당, 기초수당, 취업선택보조수당, 보육선택보조수당, 특별교육수당, 간호일액수당, 신학기수당, 가족주택수당                                 |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0.2.24

< 육아휴직제도 국제비교 >

|                             | 스웨덴   | 일본   | 독일  | 프랑스   |
|-----------------------------|---|--|---|---|
| 법률명                         | 국민보험법,<br>부모보험제도  | 육아·개호<br>휴업법   | 취업모<br>보호법  | 사회보장법   |
| 시행<br>년도                    | 1962년   | 1992년<br>(02년 개정)  | 2002년   | 1977년   |
| 자격<br>조건                    | ◦ 6개월간 근속<br>혹은 지난 2년내<br>12개월이상 근무                                 | ◦ 1년이상 근무<br>◦ 자녀 1세된 후<br>고용지속되는 자                              |   | ◦ 1년이상 근무<br>※기업규모에<br>관계없이 사용가능  |
| 사용<br>기간                    | ◦ 480일(8세<br>혹은 초등1년限)<br>※다태아 180일<br>추가                           | ◦ 1년(1세미만<br>자녀)   | 3년(3세이하 자녀)<br>※마지막 1년은<br>8세까지 연장 가능                           | 원칙적으로<br>1년이나,<br>최장 3년까지 연장<br>가능  |
| 시간제<br>휴직<br>사용<br>가능<br>여부 | ◦ 가능<br>(반일제 등)   | ◦ 가능   | ◦ 가능<br>※주 30시간까지<br>단시간 근무 가능                                  | ◦ 가능<br>※주당 16시간<br>이상은 반드시<br>근무(16시간<br>미만인 경우는<br>시간제로 인정되지<br>않아 전일제<br>휴직만 사용가능) |
| 분할<br>사용                    | 가능  | 불가능  | 가능  | ◦ 가능(1년 2회)   |
| 지원<br>수준                    | 390일간은 기존<br>임금의 80%,<br>나머지 90일은<br>일당 60코로나                       | ◦ 임금의 40%<br>※수당 30%지만<br>직장복귀 6개월<br>후 인센티브가<br>제공되어 총<br>40%수준 | ◦ 휴직기간 중<br>육아수당으로서 기존<br>월급의 67%를<br>12개월까지 지급(월<br>최대 1,800€) | 첫째아는 6개월간,<br>둘째아 이상은<br>3세가 될 때까지<br>지급  |
| 배우자<br>휴가                   | ◦ 가능(1개월)<br>※아버지<br>할당기간<br>미사용시<br>자동소멸                           | ◦ 가능   | ◦ 가능(2개월)<br>※부모 동시 사용 가능                                       | ◦ 가능<br>11일의 유급휴가<br>※쌍둥이 경우<br>18일   |
| 가족<br>간호<br>휴가제             | 자녀가 12세가<br>될 때까지 1인당<br>연간 최고<br>120일(양친<br>합계)의<br>임시양친보험<br>수급가능 | 고용주의<br>노력의무   | 12세 미만 아동을<br>대상으로<br>병아간호휴가제도(사회<br>법전)를 통해<br>질병수당금 지급        | 1세 미만 혹은<br>16세 미만 아동이<br>3인 있는 가족을<br>대상으로<br>병아간호휴가제도<br>이용가능. 원칙<br>3일             |

자료: 보건복지부

< 참고 문헌 >

- 기획예산처(2007), 『공공기관의 바람직한 가족친화경영 도입 방안』
- 보건복지가족부(2008), 『'08년 가족친화 인증 기업 우수 사례집』
- (2010), '2009년 출생이수 감소세 지속', 보도자료, 2009.2.25
- (2009), '2008년 출생이수 466천명, 합계출산율 1.19명', 보도자료, 2009.2.25
- 매경이코노미, '위기에 강한 가족친화기업이 뜬다', 제1556호, 2010년5월19일자,
- 신윤정(2009), '프랑스 저출산 정책의 주요 현황: 가족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보  
건복지포럼(통권 제153호; 2009년7월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97-107
- 여성가족부(2006), 『가족친화경영: 가족친화기업 우수 사례집』
- 은기수 외(2005), 『외국 저출산 대응정책 효과성 분석 및 우리나라 도입방안 연  
구』, 보건복지부
- 이삼식(2007), '프랑스가 극복한 저출산 대응시책과 그 성과 : 저출산, 자녀양육  
은 「개인-가정」이 아닌 「국가-사회-가족」으로의 인식이 중요하다', 자치  
행정(통권228호; 2007년 3월), 지방행정연구소, pp.18-21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06), 「새로마지플랜 2010;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최현아(2009), '다산국가 프랑스의 비결', 시사IN(제116호; 2009-12-05), pp.30-31
- 富澤信央(2006), '프랑스가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대책: 다양한 수당제도가 정책  
의 특징', 자치행정(통권220호; 2006. 7), 지방행정연구소, pp.57-60
- Laurent Caussat(2006), '프랑스의 출산 경향 및 가족친화 정책', 국제사회보장동  
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부표 > 주요 국내의 경제지표 추이

□ 국내외 성장률 추이

| 구분    | 2008년 |      |       | 2009년 |       |      |      |      | 2010  |      |
|-------|-------|------|-------|-------|-------|------|------|------|-------|------|
|       | 연간    | 3/4  | 4/4   | 연간    | 1/4   | 2/4  | 3/4  | 4/4  | 연간(E) | 1/4  |
| 미국    | 0.4   | -2.7 | -5.4  | -2.4  | -6.4  | -0.7 | 2.2  | 5.6  | 3.1   | 3.0  |
| 유로 지역 | 0.6   | -0.4 | -1.9  | -4.1  | -2.5  | -0.1 | 0.4  | 0.1  | 1.0   | 0.2  |
| 일본    | -1.2  | -4.9 | -10.3 | -5.2  | -13.7 | 6.0  | -0.6 | 3.8  | 1.9   | 5.0  |
| 중국    | 9.6   | 9.0  | 6.8   | 8.7   | 6.2   | 7.9  | 9.1  | 10.7 | 10.0  | 11.9 |
| 한국    | 2.3   | 3.1  | -3.4  | 0.2   | -4.3  | -2.2 | 1.0  | 6.0  | 4.5   | 8.1  |

주: 1) 2008, 2009년 한국자료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잠정치(P), 2010년 전망치(E)는 IMF 2010년 4월 기준임.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 한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 구분 | 2008년말           | 2009년   |         | 2010년   |         |         |           |
|----|------------------|---------|---------|---------|---------|---------|-----------|
|    |                  | 6월말     | 12월말    | 6월18일   | 6월25일   | 전주비     |           |
| 해외 |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 2.21    | 3.54    | 3.83    | 3.22    | 3.50    | 0.28p     |
|    | 엔/달러             | 90.76   | 96.65   | 92.93   | 90.43   | 89.64   | -0.79¥    |
|    | 달러/유로            | 1.4042  | 1.4141  | 1.4413  | 1.2408  | 1.2336  | -0.0072\$ |
|    | 다우존스지수(p)        | 8,776   | 8,447   | 10,428  | 10,451  | 10,153  | -298p     |
|    | 닛케이지수(p)         | 8,860   | 9,958   | 10,655  | 9,995   | 9,928   | -67p      |
| 국내 | 국고채 3년물 금리(%)    | 3.41    | 4.16    | 4.41    | 3.72    | 3.90    | 0.18p     |
|    | 원/달러(원)          | 1,259.5 | 1,273.9 | 1,164.5 | 1,202.6 | 1,215.4 | 12.8      |
|    | 코스피지수(p)         | 1,124.5 | 1,390.1 | 1,682.8 | 1,712.0 | 1,729.8 | 17.8p     |

주: 6월 25일 해외지표는 전일(6월 24일) 기준임.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 구분      | 2008년말 | 2009년  |        | 2010년  |        |        |         |
|---------|--------|--------|--------|--------|--------|--------|---------|
|         |        | 6월말    | 12월말   | 6월18일  | 6월25일  | 전주비    |         |
| 국제 유가   | WTI    | 44.61  | 69.08  | 79.35  | 77.51  | 76.15  | -1.36\$ |
|         | Dubai  | 36.45  | 71.85  | 78.06  | 76.11  | 73.77  | -2.34\$ |
| CRB선물지수 | 229.54 | 249.96 | 283.38 | 262.93 | 261.62 | -1.31p |         |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